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경 료 · 경 정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 조문의 어려운 한자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현행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륜·경정법률이 개정(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경륜·경정법 시행령을 정비함.

3. 주요내용

가. 개정 법 문장에서 정비된 용어를 시행령에 반영(현행 제12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및 제3항, 별표 2·3)

1) 경륜경정법률 개정으로 ‘승자투표 적중자’, ‘발매수득금’ 등 용어가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에 반영

나.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삭제(현행 제28조 삭제)”

1) “승자투표권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는 경륜경정법의 일부 벌칙조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제27조 제5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시행령에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경륜경정법률을 개정함

- 2) “승자투표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를 개정 경륜경정법
률(법률 제16587호, 2019.11.26., 일부개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가능하게 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03. 12 ~ 04. 2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예정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구매한 자가”를 “구매한 사람이”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승자투표 적중자(的中者)”를 “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승자투표 적중자가”를 “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이”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 중 “발매수득률+승자투표권”을 “발매이익률+승자투표권”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액-적중단위”를 “총액-경주결과를 맞힌 단위”로 하고, 같은 표 중 “적중”을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①구매한 승자투표권의 내용이 신청한 내용과 다른 경우 그 정정요구는 승자투표권을 <u>구매한 자가</u> 그 승자투표권의 발매창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경주의 승자투표권 발매가 마감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2조(승자투표권 내용의 정정) ①----- ----- ----- <u>구매한 사람이</u> ----- ----- -----.
제19조(환급금)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u>승자투표 적중자(的中者)</u> 에게 내주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각 적중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으로 하되, 그 환급금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19조(환급금) ①----- ----- <u>경주결과를 맞힌 사람</u> ----- ----- ----- ----- ----- -----.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u>승자투표 적중자가</u> 없는 경우에 지급하는 환급금은 별표 2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각 단위 승자투표권에 고르게 나눈 금액	③----- <u>경주결과를 맞힌 사람이</u> ----- ----- ----- -----

으로 한다.

④ (생략)

제28조(승자투표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①법 제25
조제2항제1호에서 “경주에 관
하여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란
경주사업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
으로서 경주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법 제2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경주 운영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
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주
시행허가를 받은 지방자치단
체 및 진흥공단(제23조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 및 진흥공단
으로부터 경주사업을 위탁받
은 자를 포함한다)의 경주사
업 관장부서의 공무원과 임직
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에 경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2> 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1. 각 승자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 승자투표권 발매금액x {1-(승자투표권 <u>발매수득률</u> +승자투표권 발매과세율)} 2. (생략)	<별표 2> 환급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1. ----- 승자투표권 발매금액x {1-(승자투표권 <u>발매이익률</u> +승자투표권 발매과세율)} 2. (현행과 같음)
<별표 3>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세금= {(환급금 총액-<u>적중단위 투표권 발매총액</u>)x환급금에 대한 과세율} x1/<u>적중승자투표권수</u>	<별표 3> 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9조 관련) 세금= {(환급금 총액-<u>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투표권 발매총액</u>)x환급금 에 대한 과세율} x1/<u>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승자투표권 수</u>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3119